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터널 가시설물 및 굴착 보조공법 설계변경 미이행

기 관 명 광주광역시

내 용

광주광역시 ○○○○○○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사비의 5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2012. 8. 20. 경기도 수원시 ○○구 ○○○ ○○○○길 ○○-○○에 있는 ○○○○(주)(대표자 ○○○)와 1개사¹⁾와 ‘○○○○도로 개설공사(2공구)’를 총 공사부기금액 36,373,649,000원²⁾으로 도급계약하고 같은 해 8. 24. 착공하여 2017. 12. 24. 준공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공사설계의 변경)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같은 기준 제6절(공사설계의 변경) 제5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 경기도 ○○시 ○○○로 000, ○○○○○○○○ 000호(○○동)에 있는 (주)○○건설 (대표자 ○○○)

2) 2017. 5. 22. 총공사부기금액이 36,990,026,000원으로 변경되었음

한편 위 관서에서는 위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터널의 굴착을 시·중점인 양방향에서 굴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터널 양측에 방음문 4개소, 방음커튼 4개소를 설계에 반영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터널 종점쪽 편입 토지의 보상지연 등으로 시점쪽에서 종점쪽으로만 일방향으로 굴착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터널 종점쪽에 설치할 계획이던 방음문 2개소, 방음커튼 2개소를 설치하지 않고 굴착공사를 2013. 9. 2. 완료하였으므로 설치하지 않은 방음문 2개소, 방음커튼 2개소를 삭제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였어야 했는데도, 2017. 9. 29.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있어 공사비 28,663,000원 상당이 부당하게 집행될 우려가 있다.

또한 터널 굴착공사를 하면서 암질이 변경되어 시공하지 않은 굴착 보조공법 등을 정산하여 설계변경 하였어야 했는데도, 2013. 9. 2. ○○터널 굴착공사를 완료하였으면서 [표]와 같이 암질이 변경되어 시공하지 않은 선진수평보링공 등 8개 터널 굴착 보조공법을 2017. 9. 29. 감사일 현재까지 삭제하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있어 공사비 37,806,000원 상당이 부당하게 집행될 우려가 있다.

[표] “암질이 변경되어 시공하지 않은 굴착 보조공법”

<단위 : 천원>

공종	단위	수 량			공사비(천원)		
		설계	시공	증·감	설계	시공	증·감
○ 공 사 비					59,481	21,675	- 37,806
- 직접공사비					44,324	16,152	- 28,172
· 선진수평보링공	m	180	90	-90	20,860	10,430	- 10,430
· 네일공	공	40	-	-40	5,516	-	- 5,516
· 수평배수공	공	16	-	-16	1,971	-	- 1,971

공종	단위	수 량			공사비(천원)		
		설계	시공	증·감	설계	시공	증·감
· 숏크리트	m3	51	27	-24	1,682	891	- 791
· 와이어메쉬	m2	458	239	-219	1,146	598	- 548
· 록볼트	조	147	81	-66	3,733	2,057	- 1,676
· 프리그라우팅	개소	15	3	-12	8,495	1,699	- 6,796
· 수평배수공	m	27	14	-13	920	477	- 443
- 제경비	식				15,157	5,523	- 9,634

※ 광주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장은

[시정] 시공하지 않은 터널 가시설물과, 터널 굴착보조공법을 정산 설계 변경하여 공사비 66,469,000원 상당을 감액하시기 바랍니다.